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번호	382
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1. 8. 25.
제안자 : 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“2021년도 제2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”을 효율적으로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특별위원회 명칭: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
- 특별위원회 구성 및 방법
 - 위원회 구성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총 9명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
- 특별위원회 존속기간: 구성일부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- 심사안건: 2021년도 제2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- 심사방법: 관계 공무원 출석 질의·답변, 관련 자료의 검토 및 심사

3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제56조, 제130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6조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, 제9조, 제10조